

##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(안)

**제1조(목적)** 본 운영(안)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〔별표1〕에 의하여 개설된 사회복지현장실습 전공과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)

①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조항에 따라 학생이 향후 관련 실습 기관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·기술·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사회복지현장 실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.

1. 기관, 지역사회,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
2. 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(지침), 자원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
3. 기관의 사회복지실천(또는 정책 및 행정 분야)에 대한 직·간접적인 경험
4. 기관의 행정 및 기록에 관한 교육
5.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, 안전지침에 대한 교육
6.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공, 실습 중간평가 진행 및 평가내용의 반영, 종결평가 진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

②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시하는 기관실습과 학교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실습세미나로 구성된다.

③ 대학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을 위한 행정총괄 및 실시기관과의 연락을 지원하고, 실습 세미나 교수는 기관실습 지도자와 협력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과목을 총괄 운영하고 최종 평가한다.

### 제3조(실습세미나)

① 실습세미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한다.
2. 학사,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한다.
3. 실습세미나는 실습 이전 진행되는 실습 전 수업, 기관실습 중 및 종결 후 진행되는 수업으로 구성되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한다.
4.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여야 하며, 30명 이상일 때 분반한다.

### 제4조(현장실습 운영 기준 등)

①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자는 기관실습 개시일 이전에 실습 전 수업을 받아야 하며, 실습 전 수업 시간은 기관실습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② 실습기간 중 실습생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기관 실습 중 실습생의 문제로 현장실습을 이어갈 수 없을 경우 실습세미나 교수, 실습기관 기관장의 허락을 득하여 실습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습생의 기 이수한 실습시간에 대해서는 감면되지 않으며, 중도 포기에 따라 사회복지사현장실습의 학점은 부여되지 않는다.

③ 실습생 개인의 질병, 사고, 사회복지기관 폐쇄, 폐업, 감염병 등으로 사회복지 현장실습과정 실

습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회복지 기관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은 실습생의 원활한 실습 교과목 이수를 위해 유사한 기관으로 이전 조치한다. 다만 이전할 기관을 찾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습을 종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실습생에게 기 이수한 실습시간에 대해서는 차후 기관실습시간 160시간에서 감면할 수 있다. 단, 수강 중인 사회복지현장실습 학점은 부여되지 않는다.

④ 감염병 등의 사유로 인해 사회복지기관 및 교육기관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경우,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은 보건복지부·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침을 따라 진행된다.

### 제5조(기관실습 운영 기준 등)

① 기관실습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.

2.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진행한다.

가.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, 법인, 시설 또는 단체일 것

나.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

다.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

(1)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

(2)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

3.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이다.

② 기관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전(前) 기간 중 160시간을 실시한다. 2학기 교과목 개설 시 기관실습은 전년도 12월~당해 연도 12월까지 실시한다.

③ 질병 휴학 등의 사유로 기관실습을 이수했으나 당해 교과목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, 사유가 종결된 후 1년 이내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해야 한다. 단, 이는 학과장, 실습담당교수 및 학과 교수의 승인 하에 인정한다.

④ 휴학 중 기관실습은 인정하지 않는다.

⑤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, 하루에 이수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.

⑥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,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 및 공휴일 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.

⑦ 실습기관과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대학생현장실습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 현장실습의 목적·범위를 벗어난 업무 등에 실습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제6조(기관실습비)

① 학생들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실습기관에 실습비를 납부한다.

② 실습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된 실습비 이상을 수납하여서는 안된다.

### 제7조(사회복지현장실습 학점 인정 및 인정 절차)

① 사회복지현장실습은 3학점으로 한다.

② 성적은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. 실습기관은 실습이 종료된 후 담당교수에게 실습생의 실습평가서를 송부한다.

### 제8조(지원 및 선발)

- ① 사회복지실습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  1. 사회복지현장실습과정 실시 전에 4개 학기 차 이상을 이수하거나 이수 예정인 자
  2. 학과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자격에 합당한 자
  3. 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신청자격에 합당한 자
- ②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수업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를 실습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9조(등록 및 수강신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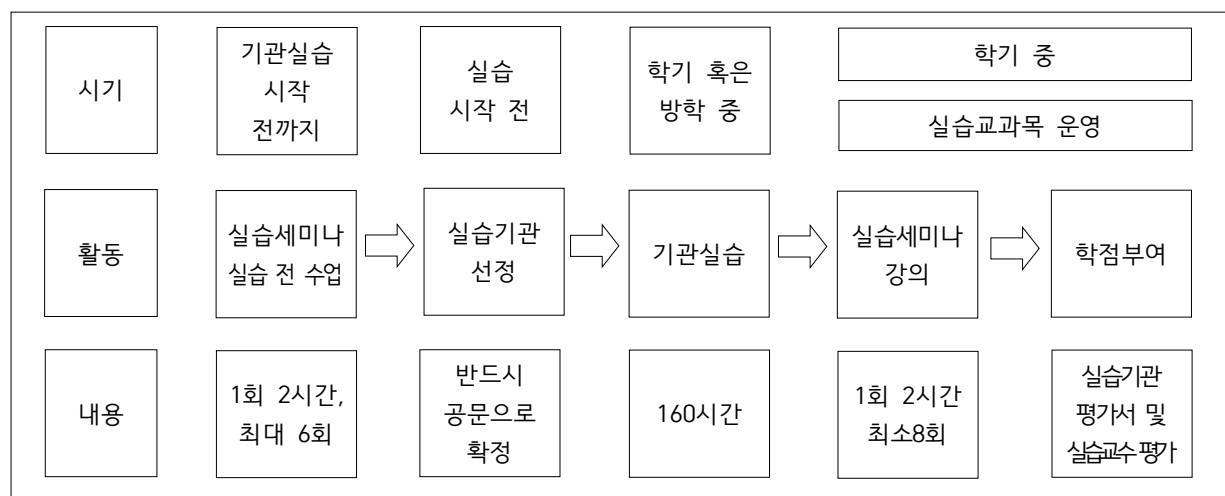
-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대상자는 해당 학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.

### 제10조(교원 강의시간 인정)

- ① 사회복지현장실습과정을 담당하는 교원의 강의시간은 3시간으로 인정한다.

### 제11조(실습진행절차)

구체적인 실습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.

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운영(안)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운영(안)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법령이 적용되는 대상자에 한해 시행되며,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. 개정 법령 적용대상자가 아닌 학생이 2021년 개설되는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수강 시, 교과목 개설 기간 외 진행된 기관실습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진행되었을 경우 이를 인정한다.